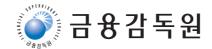
2020년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2021.2





CONTENTS



- 1 _ 공통 ----- 1
- 2 _ 전자금융 ---- 8
- **3** _ 은행 44
- 4 _ 자본시장 ---- 50
- 5 _ 보험 ----- 64
- 6 _ 상호저축 ----- 81
- 7 _ 여전 ----- 94



공 통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77)

요청대상 행위	□ (요청행위 1)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5조 제 1항 단서의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부분의 "징계"에 "주의"가 포함 되는지 여부
	□ (요청행위 2) "주의" 기록의 말소 여부, 말소 시기, 말소 방식 등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 (요청행위 3) 최근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때에, 그 이전 징계들 중 징계 수위가 '말소하고자 하는 징계'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그 이전 징계를 '말소하고자 하는 징계'와 함께 일괄 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
판 단	□ (요청행위 1) 관련 규정의 유기적 해석상 "주의"는 "징계"의 한 종류로 보여지므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5조 제1 항 단서의 "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부분의 "징계"에 "주의"가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 (요청행위 2) 감봉, 견책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주의의 말소 여부·시기·방식은 견책의 징계기록 말소기간인 2년과 같거나 그 보다 짧은 기간의 범위내에서 각 금융회사가 내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요청행위 3) 징계기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어서, 징계를 여러번 받은 경우 i) 과거의 징계기록은 '과거와 최근의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면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ii) 최근 징계기록의 말소시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각각 합당한 논거를 가지고 대립하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신중히 검토한 후 규정개정을 통해 최근 징계기록의 말소시점에 대해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판단이유	□ (요청행위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 제3조 제 19호는 징계를 "감독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라고 정의하고,
	 규정 제18조는 임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로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를, 규정 제19조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 제45조제1항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를 열거하고 있어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 (요청행위 2) 세칙 제65조제1항단서는 견책 및 감봉에 대해서만 말소기 간*을 정하고 주의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동항 본문에 따라 5년 동안 징계가 말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 * 감봉 3년, 견책 2년
- 더 경한 징계에 대하여 그 기록을 더 오랜기간 유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하게 되므로 주의의 말소 여부·시기·방식은 견책의 징계기록 말소기간인 2년과 같거나 그 보다 짧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내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 (요청행위 3) 세칙 제65조제1항단서는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타 법령에서도 징계·전과기록에 대한 말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및 동 제도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징계기록 그 자체는 영구보존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형벌의 경우 집행이 종료·면제되면 이후 다른 형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경과로 형이 실효되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 경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나, 그 기간 중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징계기록이 말소'됨(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9) → 동 내용은 "법원인사사무규칙"등 다른 공무원 관련 인사규정에 동일하게 규정
- 따라서 과거의 징계(이하 "1차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징계(이하 "2차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시 과거의 징계기록 말소가 가능하나, 세칙상 관련 규정이 없어 합리적인 기간으로 말소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해 견해가 대립합니다.
- (1안) 세칙 제65조제1항단서와 규정 형식이 유사한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하 "인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를 차용하여 1·2차징계의 각각의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 경 과시, 1·2차 징계기록을 동시에 말소

(문제점) 위 인사규정은 각각의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징계 기록을 말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세칙 제65조제1항 단서는 합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차 징계도 $1\cdot 2$ 차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 경과시점에 말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 될 소지

- (2안) 인사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참고하여 1차 징계기록은 1·2 차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 경과시에, 2차 징계기록은 세칙 제65조에 따라 이후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는 경우, 각 기간 경과시 말소

(문제점) 2차 징계의 영향으로 1차 징계기록은 유지됨에도 2차 징계기록 이 우선 말소되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볼 소지

- (결론) 징계기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어서, 징계를 여러번 받은 경우
 i) 과거의 징계기록은 '과거와 최근의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면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ii) 최근 징계기록의 말소시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각각 합당한 논거를 가지고 대립하므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신중히 검토한 후 규정개정을 통해 최근 징계기록의 말소시점에 대해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 ※ 향후 규정개정 결과가 상기 말소 관련 의견과 다소 상이할 가능성은 상존

< 관련 법규 >

□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 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 1. ~ 6. (생략)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 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 35조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가. <u>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u>: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 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u>직무정지(</u>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 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 일부터 4년
-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 3. (생략)
- 4. <u>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u> 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u>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u>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 가. 강등: 9년
- 나. 정직: 7년
- 다. 감봉: 5년
- 라. 견책: 3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 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2.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 5년
- 3. 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18. (생략)
- 19. "징계"라 함은 감독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u>제재의 종류</u>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u>직원에 대</u>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 · 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 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65조(장계기록의 말소) ① 금융기관은 <u>정직 이하</u>의 정계를 받은 후 <u>견책 이상의 정</u>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계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u>감봉 이하</u>의 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u>다른 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u>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상벌규정 등 <u>관련내규에서 정한</u>절차 및 기준에 따라 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감봉 : 3년

2. 견책 : 2년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금융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03)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내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를 예외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 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하며, 기 수립된 비상대책[*] 절차 및 「전자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단이유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준수 해야 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비상상황 종료시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택근무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04)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내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를 예외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 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하며, 기 수립된 비상대책 [*] 절차 및 「전자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 정책 ^{**} 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단이유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준수 해야 함(『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비상상황 종료시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택근무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05)

요청대상 행위	 □ 카드사가 동일 금융지주의 계열사인 A사와 신용카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를 위해 A사의 업무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각사의 DMZ 구간을 경유하는 대외망 통신 대신 방화벽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와 기능만을 이용하여 직접 통신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망분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고,
	○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 다만, 망분리 적용예외 규정에 의해 카드사가 동일 금융지주의 계열사인 A사에 신용카드 업무 일부를 위탁하면서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을 공동 사용할 수 있으며,(「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동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카드사 내부 업무용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
	 망분리 적용예외시 구체적인 망간 접속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및 제반 절차(「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3항)를 모두 준수해야 하고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07)

요청대상 행위	□ 인공지능 서비스의 소프트웨어(오픈소스) 패치(patch)를 위해 DMZ존에 패치서버를 두고 이를 내부통신망 내 설치된 인공지능 서비스용 시스템에게실시간 연결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예외적용 가부
판 단	□ 요청대상 행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물리적으로 분리(「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5호)해야 하지만,
판단이유	○ 업무상 불가피하게 DMZ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 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은 망분리 예외적용이 가능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인공지능 서비스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위해 DMZ존에 위치한 패치서 비와 내부통신망 내 위치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은 업무상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기 망분리 예외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09)

판 단 □ 요청대상 행위는 망분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운영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이 다만, 장애 등 긴급한 상황 시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 접속은 망분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3호) □ 요청대상 행위는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로 망분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망분리 적용 예외 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망분리 대체 정보도적용(시행세칙 [별표7]에 따른 단말기 보안강화, 원격접속 통제 수정보보호 위원회 승인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l 망으로 5호) 리 예외 리 적용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12)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내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를 예외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 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하며, 기 수립된 비상대책[*] 절차 및 「전자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단이유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준수 해야 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비상상황 종료시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택근무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14)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내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를 예외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하며, 기 수립된 비상대책*절차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준수해야 함(「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비상상황 종료시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택근무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15)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내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를 예외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 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하며, 기 수립된 비상대책 [*] 절차 및 「전자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 정책 ^{**} 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단이유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준수 해야 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비상상황 종료시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택근무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16)

요청대상 행위	□ 전산센터 단말기 및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망연계시스템을 통해 문서중앙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 단	□ 요청대상 행위 중 일부는 망분리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회사는 전산센터 단말기* 및 내부업무용 단말기를 위한 문서중앙솔루션을 각각 구축하고, 망연계솔루션을 통해 문서중앙서버 접속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 내부업무용 단말기가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 문서중앙서버와 접속하는 것은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판단이유	 당군더 규정에 취매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전산센터 단말기는 물리적으로 망분리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5호),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 시에도 내부업무용시스템과의연결구간을 차단하여야 하는데(「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제2항제4호) ○ 질의내용의 문서중앙서버는 전자문서를 통합 저장하는 내부업무용 시스템으로 판단되는 바 전산센터 단말기는 문서중앙서버로의 연결을 차단해야하고,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 파일을 송수신 하는 것은 접속을 차단했다고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내부업무용 단말기 전체가 문서중앙서버 통해 연결되는 구성은 악성코드 감염 및 전파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중앙문서서버의 악성코드 예방통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18)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내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를 예외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하며, 기 수립된 비상대책 절차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 정책 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준수해야 함(「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비상상황 종료시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택근무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30)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 허용 범위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에 따른 중요단말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는 용도, 데이터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단말기를 지정하고 중요 단말기에 대해서는 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제1항제3호) 중요단말기는 망분리 적용을 예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 행세칙」제2조의2제1항)
	□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이 선언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는 불가피하다고판단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한시적으로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2020.2.7.)
판단이유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따라 재택근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중요단말기에 대해서도 원격 접속을 통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단말기의 경우 정보유출 위험에 더욱 유의하시고 강화된 보안 정책*을 적용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근무 직원 및 단말기 사전승인, 재택근무 단말기는 회사 단말기와 동일한 보안통제 적용, 원격접속시 통신 암호화 및 이중인증 적용, 원격접속 및 자료 반출입 이상징후 모니터링 강화 등
	 또한, 기 수립된 비상대책*절차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 및 그 외 관계 법규을 모두 준수하시고 비상상황 종료시 원격접속을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준수
	* 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미상대책 등을 구입·문구 해야 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34)

요청대상 행위	□ 서버 및 DB를 운영하는 단말기를 VDI로 구성하고, 전산센터 업무용 단말기 내에서 동 VDI를 이용하는 것이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판 단	□ 문의하신 내용은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미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전산센터 단말기를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연결하여 가상PC(VDI)를 구성하면 하나의 단말기에서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내부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가능하여 전산센터 단말기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35)

요청대상 행위	□ 서버접속통제 솔루션을 경유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중요 단말기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를 지정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3호), ○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회사는 단말기의 용도 및 취급 자료의 종류,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중요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17.5월)에 따르면 중요단말기 유형을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DB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권한이 부여되는 단말기'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 내용은 예시이며 중요 단말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중요 단말기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적용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36)

요청대상 행위	□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운영용 서버와 개발·검증용 서버를 분리구성하고, 네트워크 가상화를 이용하여 운영망과 개발·검증망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4호를 위배하는지 여부
판 단	□ 요청 행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4호를 위배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담당, 개발담당 및 외부직원 등 업무 특성별로 네트 워크를 적절하게 분리하여 IP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제4호) □ 동 조항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전산센터 직원 및 외부직원간의 네트워크를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간 연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 귀사에서 문의하신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운영용 서버와 개발·검증용
	서버를 분리구성하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운영망과 개발· 검증망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4호를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50)

요청대상 행위	□ 회사 임직원이 IT계열사의 전산센터 [*] 에 위치한 그룹웨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 내부망에서 IT계열사 전산센터는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IT계열사가 그룹웨어 시스템을 운영
판 단	□ 문의하신 내용은 망분리 예외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내부망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하여야 하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 망분리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 □ 회사 임직원이 IT계열사의 전산센터에 위치한 그룹웨어시스템(이하 '계열사 그룹웨어')를 이용하는 것은 내부망 단말기(임직원 단말기)가 업무상 필수적 으로 외부망(IT계열사 전산센터)에 연결하는 것으로, 망분리 예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
	통제를 적용하시고, 계열사 그룹웨어는 신청사 이외의 다른 계열사와는 네트워크를 분리하여야 하며, IT계열사 전산센터와 회사 내부망과 연결 구간에는 방화벽을 설치하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한하여 운영하시는 등 보안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53)

요청대상 행위	□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단말기는 별도의 전용선을 이용 하여야 하는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전산센터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사의 네트워크 구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전산센터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단말기의 회선을 분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전산센터 단말기는 내부업무용 단말기와 물리적으로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단말기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케이블은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산센터 단말기는 인터넷용 단말기와 인터넷 회선을 공유할 수 없으며, 내부업무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61)

요청대상 행위	□ 甲사는 지급인의 각종 비용(입항료,화물입출항료,물류비 등)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의 역할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만약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면 '등록'을 필요로 하는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19호).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 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이체업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의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 ○ 따라서 만약 甲사가 재화구입 또는 용역이용의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 또는 수수대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자지급거래 관한 정보만을 전달한다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62)

요청대상 행위	□ 내부업무망 단말기에서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 연결하는 것이 망분리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제1항)
판 단	□ 문의하신 내용은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에서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업무상 필수적으로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라 함은 ○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 사이트는 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외부 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망분리 적용 예외 시『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망분리 대체정보보호통제 적용, 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63)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 허용 범위에 국외 영업점 소재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감염 확산에 따른 현지 정부의 국가 봉쇄조치 및 원격 근무 시행 권고에 따라 국외 영업점 소재 직원의 재택근무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국외 영업점 소재 직원들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조 제1항 제3호의 예외를 적용하여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유	 다만, 기 수립된 비상대책*절차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 및 그 외 관계 법규을 모두 준수하시고 비상 상황 종료시 원격접속을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준수 해야 함(「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64)

요청대상 행위	□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을 위해 DMZ에 있는 중계서버를 통하여 인터넷망의 클라우드에 위치한 취약점 점검 서버와 내부망 개발서버가 통신하는 것이 물리적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 단	□ 문의하신 내용은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전산센터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DMZ 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 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은 망분리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내부망 개발서버가 DMZ에 있는 중계서버를 통하여 인터넷망의 클라우드에 위치한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 서버와 통신하는 것은 망분리 예외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오픈 소스 취약점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내부망-DMZ 통신은 실시간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취약점 점검을 위해서 대량의 최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내부망과 DMZ 통신 구간에 악성코드 진단 및 치료 대책, 정보유출예방 대책을 적용하는 등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를 준수 하시고
	○ 개발서버의 취약점 점검 Agent는 데이터 추출 이 외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도록 (예. 서버 설정 변경, 프로그램 설치 등) 할 수 없도록 권한을 통제하여야하며,

- 개발 서버 네트워크와 **운영 시스템 네트워크는 분리·차단**하고
- 전송 데이터(점검 대상 메타데이터) 및 수신 데이터(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는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등 유출 또는 변조 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65)

요청대상 행위	□ 자동차 사고 보상서비스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시간 영상 상담 시스템(DMZ에 웹서버 설치, 내부망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설치)에 구축하는 것이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판 단	□ 문의하신 내용은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전산센터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DMZ 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메이되로 소소시킨는 개보통신만의 전보기기시스템의 만보기 에의 점요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은 망분리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비대면 보상서비스를 위해 실시간 영상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을 구성하는 DMZ의 정보처리시스템과 내부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신하는 것은 망분리 예외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망분리 예외 적용 시, 업무망으로 인입되는 데이터에 대해 악성코드 진단 및 치료, 업무용 단말기는 미승인 프로그램이 설치·실행되지 않도록 조치 하는 등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66)

요청대상 행위	□ A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콘텐츠 판매를 기획하고 결제관리시스템은 당사가 직접 제작·관리하지만 결제관리시스템중 자금결제를 PG사 통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외부 PG사의 결제대행시스템을 B사를 통해 계약하고 이 과정에서 B사는 지급결제정보를 열람 할 뿐 직접 전송하지 않으나, 외부 PG사를 통해 결제된 구매자의 결제자금은 B사의 계좌를 통해 A사로 전달하며, B사는 정산대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 B사가 등록을 해야 하는지 및 등록을 해야 한다면 등록요건 중 인력 및 물 적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판 단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제3자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9호) ○ 즉,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지 않더라도 대가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를 한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됩니다. □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등록면제 요건에 해당됩니다.(법 제28조 제3항 2호, 시행령 제15조 제7항) ○ 비조치의견서 요청서상 사업 모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B사는 B사의 계좌를 통해 A사로 전달하며 정산대행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면제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전자금융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을 갖추어야 하는 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이므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0조의 인적 및 물적 세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따라서 B사가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B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0조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참고로, 만약 A사가 직접 자금결제를 하여 정산대행을 한다면 A사 역시 등록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67)

 □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의 범위에 계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고객정보 조회 및 상담・예약거래업무,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입출금 거래업무, 예산 및 경비집행업무, 회계처리 관련 업무, 기타 본부부서 업무수행 시 필요한 계리업무 등 □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내부 업무용망과 네트워크 대역으로 분리된 망에 VDI를 구성하여 차단・통제 조치한 경우 임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청대상 행위의 일부는 망분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외부 단말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회사 내부망으로 원격 접속할수 없습니다. ① 그러나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 졌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2020.2.7.) ○ 또한,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재택근무 가능 범위는 제한이 없음을 비조치 의견서로 회신한 바 있으며(2020.4.17.) 이는 문의하신 계정계 업무도 적용됩니다. ○ 다만, 입출금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정보 등 중요 자료를 취급하는 바, 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위험에 더욱 유의하시고 강화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근무 직원 및 단말기 사전승인, 재택근무 단말기는 회사 단말기와 동일한 보안통제 적용, 원격접속시 통신 암호화 및 이중인증 적용, 원격접속 및 자료 반출입 이상징후 모니터링 강화 등 ○ 회사 내 기 수립된 비상대책 철차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 및 그 외 관계 법규를 모두 준수하셔야 한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준수해야 함 (「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
-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 ② **망분리 적용 예외를 통한 원격접속**은 코로나 19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비상상황 종료시 원격접속을 즉시 차단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VDI를 이용한 원격접속은 망분리 규정을 준수한다는 비조치의견서 회신^{*}를 참고하여 **상시 원격접속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으나
 - * 내부 업무망과 분리·독립된 망을 구성하여 별도의 원격접속용 VDI를 이용하는 경우 망분리 규정 준수 (2016.7.22.)
-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문의하신 방식은 회사 외부 단말기로 내부 업무용 VDI로 원격 접속하는 것으로 기존 비조치 의견서의 구성(원격접속용 VDI를 별도로 구성)과 다르며, 망분리 규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69)

요청대상 행위	 1. 핀테크업체(전자금융업자)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신원 확인 의무를 최초1회만 확인할 예정이며 매번 거래시마다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 2. 일정기간 이용자의 접근이 없는 경우, 이용자의 본인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 단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기관')가 전자금융거래를 할 경우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 기관이 전자금융거래시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경쟁촉진적인 인증기술 사용을 위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등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금융위원회고시 제2015-7호) 요청하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나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을확인하거나 핀테크업체(전자금융업자)와 업무 위탁 계약을 통하여 이용자 신원확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규의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안 및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74)

요청대상 행위	□ (A) 그룹망 DMZ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B) 회사 내부망 내 정보처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송수신하는 경우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전자 금융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 * DMZ 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은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 가능
판 단	□ 요청대상 행위는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DMZ 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은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가 가능합니다.(전자금융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DMZ 구간이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전자금융)
	□ DMZ 구간이란 내구동신당과 외구동신당 사이의 독립된 동신당(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7조)로, 특정 용도(예: 인터넷 뱅킹 등 대고객 서비스)의 DMZ만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 내부망과 그룹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도 DMZ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그룹망 DMZ 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B)회사 내부망 정보 처리시스템간 실시간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하는 경우는 전자금융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84)

요청대상 행위	□ 내부직원과 외주직원이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 된 내부 업무용 Thin Client 를 개발 업무용, 운영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물리적 망분리 및 외부주문 규정 을 준수 하는 지
판 단	□ 아래 판단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전산센터 단말기')에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판단이유	○ 또한,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 규정 제60조 제1항 제1호)
	□ 귀사에서 제출하신 요청서만으로는 외주직원의 업무장소가 내부 업무용과 분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망분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만 회신드리겠습니다.
	□ 물리적 망분리 규제는 전산센터 단말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개발용 및 운영용 등의 내부망 분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보안 정책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 및 내부 통신망을 개발, 검증, 운영용으로 분리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 때 Thin client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107)

요청대상 행위	□ 크롬북 (Chrome book)과 VMWare Horizon Client 의 자체 보안기능 을 이용하여 간접접속 방식 으로 회사 내부망으로 원격 접속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를 및 [별표7]을 준수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 단	□ 질의하신 원격접속 방식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를 및 [별표7]을 충분히 준수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망분리 규제로(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인해 회사 외부에서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없어 재택근무가 사실상 불가하였으나,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따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20.2월)한 바 있고 ○ '20.11.6. 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보안을 갖춘 경우상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제2조의2 제1항 제2호) □ 여기서 보안을 갖춘 경우란, 회사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며 [별표7]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귀사는 크롬북(Chrome book)과 VMWare Horizon Client의 자체 보안기능*을 이용 시 [별표7]의 백신 설치,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악성코드 감염, 정보유출 리스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 인터넷 화이트리스팅 기능으로 크롬북 자체 업데이트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 차단, 부팅 시 자동 패치 적용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체크, 인쇄・캡쳐 기능의 비활성화, VMWare Horizon Client로 접속 시 이중인증 적용 및 SSL 통신 ○ 그러나 크롬북을 개발자 모드로 이용 시 회사가 설정한 보안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고, VMWare Horizon의 SSL 암호화 통신의 보안성이 낮아,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문의하신 크롬북과 VMWare Horizon Client의 자체 보안기능만을 이용한 원격접속 방식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를 및 [별표7]을 준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108)

요청대상 행위	□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단말기는 별도의 전용선을 이용 하여야 하는지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전산센터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사의 네트워크 구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전산센터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단말기의 회선을 분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전산센터 단말기는 내부업무용 단말기와 물리적으로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단말기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케이블은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산센터 단말기는 인터넷용 단말기와 인터넷 회선을 공유할 수 없으며, 내부업무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109)

요청대상 행위	 □ 인터넷 전용 단말기에서 업무용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 무선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전용 단말기에서 업무용 VDI를 접속할 수 있는지 □ 사내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전용 단말기를 외부로 반출하여 이 단말기로 사내 업무용 VDI를 원격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
판 단	□ 문의하신 내용 중 일부는 망분리 규정 및 무선통신망 규정을 위반 하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 단말기를 인터넷과 분리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 여기서 내부 업무는 업무용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업무 뿐 아니라 문서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전용 단말기에서 업무용 문서를 조회, 편집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은 망분리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를 최소한으로 국한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제1호) ○ '최소한'의 범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지만, 지원 모두가 업무용으로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것 이라면 '최소한'의 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9년 2월 유사한 내용으로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점 내 무선을 이용한 망분리된 가상테스크톱 접속 가능 여부(19.27.) ③ 금융회사는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망으로부터 내부 업무용 시스템으로 원격접속하실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제2호) ○ 원격접속 시 이용하는 외부 단말기에 대해 회사 또는 개인 소유의 단말기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내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용 단말기를 외부로 반출하여 원격접속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원격접속 방식은 VDI를 이용한 '간접접속' 방식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외부용 단말기(사내 인터넷 전용 단말기)에는 <별표7>의 '간접접속'에 해당하는 통제사항을 적용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109)

요청대상 행위	□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를 조회하는 업무용 단말기를 '중요단말기'로 지정 하여야 하는지
판 단	□ 중요 단말기 지정 여부 는 회사가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는 단말기 보호를 위해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제3호)
	 2017년 5월에 발간된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에서는 중요단말기를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DB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권한이 부여되는 단말기'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규정에서 중요단말기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중요단말기의 범위는 처리되는 업무 및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정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다거나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정보 처리시스템이나 정보보호시스템에 중요 작업을 수행하는 단말기의 경우 악성코드 감염예방 및 정보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 단말기로 지정하고 강화된 보안 대책을 적용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은 행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19)

요청대상 행위	□최초 농협중앙회('12.3월 농협은행 분할 전)로 입사했다가 물적분할에 따른 사업 구조개편으로 은행 외 타 법인으로 고용 승계된 후 다시 은행으로 전적한 경우, 타 법인 근무시 농협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판 단	□ 「은행법」제38조 제6호 이하 은행 임직원 대출 관련 법규는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 건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3조 제1항 제4호는 차주가 농협은행에 재임 또는 재직하기 이전에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함 ○ 따라서 농협은행이 아닌 다른 법인 재직시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액 산정시 제외됨
	□ 다만 본 건 관련 규정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4호가 2016.7.20. 신설되어 2016.7.30. 시행되었으며, 별도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 농협은행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하기 이전에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2016.7.30.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 산정 시 제외 되지만, 2016.7.30. 이전에는 임직원 대출 한도 산정 시 포함됨
판단이유	 □ 본 건과 관련 있는 임직원 대출 규제 조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3조제1항 제4호로서 2016.7.20. 신설되어 2016.7.30. 시행되었으며 별도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부칙 조항은 없으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 ○ 신설된 임직원 대출규제는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은행업감독규정」제56조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 대출'한도규제 대상인 임직원 대출금액 산정시 제외된다는 내용임 ○ 따라서 농협은행이 아닌 다른 법인 재직시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임직원 대출금액 산정시 제외됨 □ 다만 2016.7.30. 이전에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3조 제1항 제4호가 없었고, 동 조항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별도의 부칙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 2016.7.30. 이전에 농협은행 소속이 아닌 자로서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은 농협은행 임직원의 임직원 대출금액 산정시 포함됨 □ 그리고 2016.7.30. 이후에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3조 제1항 제4호가 신설・시행되었으므로, ○ 2016.7.30. 이후에 농협은행 소속이 아닌 자로서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농협은행 임직원의 임직원 대출금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39)

요청대상 행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등으로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경영지도비율(100%)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동 경영지도비율을 위반하더라도 제97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 단	2021.6.30.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등으로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90%를 하회하지 않을 경우,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하락을 이유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제97조 제4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면제 다만,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하락 원인, 조치사항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판단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이 악화된 점 및 2020. 4. 16. 금융위·금감원이 은행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경영지도비율을 완화한 취지 등을 감안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57)

요청대상 행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등으로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원화예대율 경영지도비율(100%)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동 경영지도비율을 위반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 단	2021.6.30.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등으로 원화예대율이 105%를 상회하지 않을 경우, 원화예대율 경영지도비율 위반을 이유로 한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면제 다만, 원화예대율이 10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상승 원인, 조치사항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판단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이 악화된 점 및 2020. 4. 16. 금융위·금감원이 은행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경영지도비율을 완화한 취지 등을 감안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94)

요청대상 행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 산정시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제외되는데, 해당 대출을 연기 또는 연기성 대환하는 경우도 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판 단	 □「은행법」제38조 제6호 이하 은행 임직원 대출 관련 법규는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은행업감독규정」및「시행세칙」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 ○ 이에 따라, 은행의 임직원이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연기 또는 연기성 대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 산정 시 포함됨
판단이유	□ 「은행법」제38조 제6호에 따라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재임 또는 재직이전 실행한 대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됨 ○ 이러한 "원칙금지, 예외허용"이라는 동 규제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은행 재직이전 대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대출이 만기연장이나 갱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20)

요청대상 행위	□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 및 임의상환과 관련된 다음 규정을 예외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해야 함(「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3항)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담보증권 등을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제1항제2호)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않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담보 증권 등을 임의처분 할 수 있음(「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제2항 전단)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한 시장 불안 및 투자자 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간('20.3.16~'20.9.15)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 규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례를 부여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3항을 예외 적용하여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 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同 규정 제4-28조제1항제2호를 예외 적용하여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음 ○ 同 규정 제4-28조제2항 전단을 예외 적용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담보비율 및 임의상환방법 변경에 관한 사전 안내 및 협의가 필요 □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는 담보유지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同 담보유지비율을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38)

요청대상 행위	 □ '19.7.1.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이 의무화 (자본시장법 § 101, 자본시장법 부칙 § 3, 금융투자업규정 § 4-80의2) ○ 신규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신고 前 1년 이내, 기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던 자('19.7.1. 前 신고)의 경우 '20.6.30.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함 ○ 기한 내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신고 불수리(신규업자) 또는 직권말소(기존업자) 대상에 포함됨
	□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로 인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집합 교육'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을 주관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의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
판 단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집합교육'을 운영하기 곤란하므로, '온라인 방식'의 교육 이수를 인정할 필요
	 ○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1조제7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집합교육 미이수로 인한 신고 불수리 또는 직권말소 조치를 면할 예정 □ 다만, 본 비조치의견서는 2020.9.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lt;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87)

요청대상 행위	 □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 및임의상환과 관련된 다음 규정을 예외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지체 없이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해야 함(「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3항)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담보증권 등을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제1항제2호)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않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담보증권 등을 임의처분 할 수 있음(「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제2항 전단)
판 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한 시장 불안 및 투자자 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 규제에 대해 6개월간('20.3.16~'20.9.15.) 부여되었던 다음의 특례를 6개월간 ('20.9.16~'21.3.15.) 연장합니다. * 시장상황 급변시 신용공여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등의 조치 관련 예외 적용 (일련번호 200020, '20.3.13.) ○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3항을 예외 적용하여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 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同 규정 제4-28조제1항제2호를 예외 적용하여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음 ○ 同 규정 제4-28조제2항 전단을 예외 적용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담보비율 및 임의상환방법 변경에 관한 사전 안내 및 협의가 필요

-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담보유지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同 담보유지비율을 신용공여 금액의 14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88)

요청대상 행위	 □ 동일 인가단위의 금융투자업자 간의 투자권유 등의 간접적 영업활동에 따른 수수료 배분이 가능한지 여부 ○ 투자중개업자(신청인)는 파생상품 알고리즘펀드에 대한 파생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며, 동 펀드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문의 특성상 신청인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펀드임 ○ 펀드수탁고가 증가할 경우 신청인의 위탁매매수수료 수익도 확대되는 구조이므로, 펀드판매로 인해 신청인이 수취한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판매회사에게 배분하고자 함
판 단	□ 신청인의 요청대상 행위는 현행법규에 위배되며,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고, 투자자 보호도 훼손될 소지가 있어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 첫째, 특정펀드로부터 위탁매매의 주문을 받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펀드 판매회사에게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행위는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수령제공 금지(☆ \$68)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특정펀드 판매시 받는 수수료가 다른 펀드취급시 받는 보수·수수료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펀드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기울이거나, 펀드 관련 매매주문을 특정회사에 배정토록 요구하는 등 펀드판매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금융투자업규정 \$4·20)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 셋째, 펀드 판매회사가 펀드판매 실적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추가적인 위탁매매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큽니다. ○ 판매회사는 해당펀드 판매시 동 펀드로부터 정해진 판매수수료·보수와 함께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의 일부를 수취함에도 투자권유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 펀드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펀드수익자 및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게 될 소지가 있는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문제발생이 우려됩니다.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91)

요청대상 행위	□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달리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 후순위 수익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가입하는 경우 손실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 단	□ 하단 참조
판단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49조의8제7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제249조의8제7항에 따라 손익차등형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라도 수익자간의 손익의 분배는 개별 수익자가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특정 수익자에게 일방적인이익을 제공하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행위는 손실보전에 해당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음은 기 법령해석 된 바 있습니다(2020.3.2. 법령해석회신문 190242) □ 문의하신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손익차등형 펀드의 펀드구조, 종별 구체적인 손익구조, 편입자산의 특성, 펀드 투자대상자산이 편입될 당시 예상되는 위험의 정도, 수익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와 예상되는 수익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수익자에게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와 다름없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따라 달리 판단될 수 밖에 없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t;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93)

요청대상 행위	□ 대체투자 실사 프로세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구체적인 사안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경우에 대해 비조치를 요청
판 단	□ 하단 참조
판단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9조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19조 각호의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들의 경우 대부분 해외 부동산, 해외 대출채권 등 해외 자산이나 대체투자 부문과 관련되어 있고, 금융회사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다면 해당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 문의하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이 어떠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확인되지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세무 관련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도 독립적인 세무실사보고서의 작성을 완전히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자산 소재지에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라도 펀드 설정을 위해서는 점점시시되고 보기되고 되어 되었다.
	현장실사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97)

요청대상 행위	 □ '19.7.1.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이 의무화 (자본시장법 § 101, 자본시장법 부칙 § 3, 금융투자업규정 § 4-80의2) ○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던 자('19.7.1. 前 신고)는 '20.6.30.(개정 후 1년)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됨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계속영업 의사가 있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의무교육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
판 단	□ '19.7월부터 월 1회 실시되었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집합교육이 코로나19 감염우려로 '20.3~4월(2개월) 기간 중 일시 중단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 '20.12.31.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 * '20.12.31.까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운영될 예정('20.9.23.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판단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5조의3 (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0년 10월 8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21)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개정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을 보험 상품에 반영하는 개정 작업에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감독규정 부칙 제3조(특례)에 따라 '20.3.31.까지 적용 유예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조치를 요청
판 단	 □ 감독규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외부적 상황을 감안하여 ① 보험 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특례) 의거 적용 유예된 감독규정'에 한하여 ② 유예기간 종 료일 익일부터 '20.5.31.기간 중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조치할 예정 *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3호, 제7-55조, 제7-64조제3호, 제7-69조, 제7-70조, 별표14 및 별표15 □ 다만, 예정이율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 인상 내용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면서도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상기 개정 감독규정을 선택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비조치의견서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020년 3월 18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22)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개정 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을 보험 상품에 반영하는 개정 작업에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감독규정 부칙 제3조(특례)에 따라 '20.3.31.까지 적용 유예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조치를 요청
판	 □ 감독규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외부적 상황을 감안하여 ① 보험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특례) 의거 적용 유예된 감독규정'에 한하여 ② 유예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20.5.31.기간 중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조치할 예정 *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3호, 제7-55조, 제7-64조제3호, 제7-69조, 제7-70조, 별표14 및 별표15 □ 다만, 예정이율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 인상 내용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면서도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상기 개정 감독규정을 선택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비조치의견서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020년 3월 18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23)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콜센터의 고객 응대 불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 보안성 제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시 회사에 대한 행정적 제재에 대해 한시적 면책을 요청 <당사 및 자회사 조치사항 : 물리보안 측면> ○ 보안정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 사용 - 디스크 암호화(비트라커)를 통해 PC데이터 유출 방지 - 운영체제 및 사용 프로그램 최신 버전 유지 ○ VPN을 위용한 네크워크 보안 강화 - 전용선에 준하는 LAN TO LAN VPN 방식 적용 ○ USB/외장하드 등 외부장치 연결통제 및 읽기/쓰기 금지 ○ 출력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쇄/출력 불가 ○ 화면 캡쳐 방지, 파일 암호화(DRM), PC 내 개인정보 탐색 ○ 인가되지 않은 S/W 설치 차단 ○ O/S 사용자 권한통제로 사용자 임의 IP 변경 불가 ○ 개인정보 조회 현황, 업무시스템 접속현황에 대해 모니터링 가능 <당사 및 자회사 조치사항 : 보안의식 측면>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 업무 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금지,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사전 승인되지 않은 근무지 이탈 불가 - 필요 시 재택근무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실시 ○ 재택근무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추가 징구 ○ 일일 보안 체크리스트 제출 * 재택 근무자는 보험영업(어웃바운드콜)이 아닌 상담직무(인바운드콜)에 한정되어 시행
판 단	□ 비조치의견서 요청서상의 '물리보안' 및 '보안의식'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기관(콜센터 업무수탁 자회사 포함)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면할 예정 □ 다만, 본 비조치의견서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단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답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2020년 3월 26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2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으로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영업이 크게 위축 됨에 따라 대면채널의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보험을 모집할 수 요청대상 행위 있도록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비조치를 요청 □ 코로나바이러스갂염증-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아래와 같이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모집 시 보험업법상 제재를 비조치 (1)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의 중요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하나,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은 후 동 규정 제4-36조 제9항에 따라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 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다만, 동 규정 제7-45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가능)"한 경우 비조치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4-36조 제7항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제작,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동 규정 제4-35조를 준수 하여야 함 판 단 (2)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전자서명 포함)을 받아야 하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표준약관)에서는 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해당 계 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대면채널을 통한 계약 청약 시 상기 (1)에 따라 설명의무 등을 이행한 경우 보 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고 청약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음성녹취)가 있는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 니할 수 있도록 비조치 □ 한편, 보험회사는 상기 (1), (2)를 통해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중요내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 보험업법 제102조의4,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현행 청약철회기간보다 최소 45일을 연장하여야 함

* 동 조치를 이행한 경우 보험업법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및 제4-36조의2 등 통신판매 시 적용되는 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1) 동 비조치의견서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대면 모집 시 적용되는 설명의무이행 방식 및 청약서 자필서명 관련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채널(통신판매)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으로 인한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및「민·상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완전판매 책임을면제하는 것은 아님

2) 보험회사는 동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 모집절차변경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보험상품 선정, 보험 모집종사자 교육, 녹취파일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보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운용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파단이유

다성) 제2호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020년 4월 10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으로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영업이 크게 위축 됨에 따라 대면채널의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보험을 모집할 수 요청대상 행위 있도록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비조치를 요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아래와 같이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모집 시 보험업법상 제재를 비조치 (1)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의 중요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하나,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은 후 동 규정 제4-36조 제9항에 따라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 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다만, 동 규정 제7-45조의2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가능)"한 경우 비조치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4-36조 제7항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제작,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동 규정 제4-35조를 준수 하여야 함 판 단 (2)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전자서명 포함)을 받아야 하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표준약관)에서는 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해당 계 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대면채널을 통한 계약 청약 시 상기 (1)에 따라 설명의무 등을 이행한 경우 보 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고 청약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음성녹취)가 있는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 니할 수 있도록 비조치 □ 한편, 보험회사는 상기 (1), (2)를 통해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중요내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 보험업법 제102조의4,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현행 청약철회기간보다 최소 45일을 연장하여야 함

* 동 조치를 이행한 경우 보험업법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및 제4-36조의2 등 통신판매 시 적용되는 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주1) 동 비조치의견서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대면 모집 시 적용되는 설명의무이행 방식 및 청약서 자필서명 관련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채널 (통신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으로 인한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및「민·상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완전판매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님
 - 2) 보험회사는 동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 모집절차 변경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보험상품 선정, 보험 모집종사자 교육, 녹취파일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운용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판단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적용 대상) 제2호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 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020년 4월 10일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32)

요청대상 행위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한 고객에 대하여 '추가 질의서'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질의서가 보험업 관계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 단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계약전 알릴의무 외에 보험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질의서는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단이유	 □ 상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에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상법 제651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51조의2). □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표준사업방법서 <부표>1 참고), ○ 표준사업방법서의 '경미한 사항을 수정・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 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작성·변경하는 경우 금용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 또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는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함 □ 상법, 보험업법규 등에서 정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계약인수 여부, 보장제한 등의 보험계약의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질의서는 ○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으로 불합리하게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어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추가 질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추가 질의서가 부가되는 보험상품, 보험계약 인수기준과의 연관성, 자료확보 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33)

요청대상 행위	□ 보험금이 테러자금이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외에 사유를 보험약관에 추가하는 경우 보험업 관계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 단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보험약관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고 보험약관을 작성·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판단이유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상해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이 테러자금이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외에 사유를 추가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업 관계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76)

요청대상 행위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교육일자가 2년을 경과하였지만 유효기간이 남은 신규 교육확인증 제출한 경우, 고령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 하는 것이 현행 자동차보험 기초서류(약관)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 단	□ 교육 주관기관이 발급 또는 재발급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교육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서류 위반이 아님
판단이유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보험료 할인특약상 '교육일 2년 경과' 조건은 이수교육의 유효기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 주관기관이 발급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교육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아울러 '20.4.8.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규정」을 개정 추진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86)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방법인 "집합교육"이 곤란하므로, "사이버 교육"등 대체적 방법을 통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 이수를 한시적 인정해 줄 것을 요청
판 단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방지 교육시, 동 시행령 별표4제2호다목에서 정한 교육방법中 "집합교육" 이외에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는 경우에도 보험업법상 제재를 비조치 ※ 동 비조치의견서는 2020.12.31.까지 유효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020년 9월 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99)

요청대상 행위	□ 건강보험에 치아특약을 부가함에 따라 기존 계약전 알릴의무에 치아담보와 관련한 계약전 알릴의무 추가시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 현재 치아담보는 주계약으로 판매중이며, 해당상품의 계약전 알릴의무는 이미 신고받음)
판 단	□ 치아보험과 관련하여 해당 담보를 특약으로 부가하여 이미 신고받은 치아담보와 관련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단이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서 제11조에 '청약서 내용 중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부표 1>을 표준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7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 보장 내용에 따라 축소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와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상품 보장내용으로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동 조항의 취지를 생각할 때 동일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사용할 경우 신고사항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보험회사의 해지권 및 보장제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치아보장과 관련된 계약전 알릴의무는 치아보장이 아닌 다른 보장내용의계약전 알릴의무 사항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100)

요청대상 행위	□ 신용카드 납부건의 품질보증에 따른 계약 소멸 시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반환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카드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이자기간의 기 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판 단	□ 신용카드 납부건의 품질보증에 따른 계약소멸시 보험회사가 카드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이자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판단이유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에 따라 보험회사가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표준약관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거절한 경우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나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표준약관 제16조에 명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회사가 어떤 이익 또는 금전을 수령한 날, 즉 '회사가 카드회사로부터 보험료를받은 날'을 이자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103)

요청대상 행위	자동차보험 대물담보는 사고로 차량 전손시 피해차량의 최종가액 뿐만 아니라 대용품을 취득하는 세금까지 보상하는데, 취득세 계산시 피해차량의 최종가액 상당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 취득세를 보상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 단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2. 교환가액에서는 차량 전손시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을 취득세로 보상하도록 규정 ○ 따라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지와 같이 차량 전손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u>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u> 에 해당하는 대용품을 <u>취득하는데 실제 소요된 비용을</u> 취득세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판단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2. 교환가액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29)

요청대상 행위	□ 당 저축은행은 NPL매입자금대출(NPL담보대출)을 단독으로 취급할 때, 원리금 연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 분류 가능 여부를 질의
판 단	□ NPL매입자금대출(NPL담보대출)을 단독으로 취급시, '요주의'이하 분류하고, 분기별 NPL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채권 장부가액 미 만인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회수예상가액 해당분은 고정, 잔여분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판단이유	□ NPL매입자금대출(NPL담보대출)은 기존의 NPL관련 ABL과 상환구조가 동일 하므로 기존의 ABL 건전성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요주의'이하 분류 ○ 다만, 선순위의 경우 중·후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리금 회수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원리금 연체상황 등에 따라 '정상'이하 분류 가능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54)

대상행위	□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사무공간(사무실)이 폐쇄되거나, 순환재택근무 실시· 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에 의한 경영공시를 기한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 코로나19로 금융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법령상 경영공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0.4.1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여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아래 사유로 기한내 경영공시를 하지 못한 경우, 공시 기한 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이행하면 조치를 면제할 예정(다만,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 동기 등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음) ※ 단, 사유가 해소된 이후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보고서는 비조치대상이 아님
	□ 동 비조치의견은 제출기한이 '20.4월말부터 12월말까지인 경영공시에 대해서만 적용
판 단	□ 다만, 코로나19로 개별 조합이 경영공시를 기한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본점 등 폐쇄조치가 해소된 이후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아 래 -
	①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의 영향으로 해당 조합 본점 또는 대체사무 공간(지점 등)이 폐쇄되어 기한내 경영공시 이행이 불가한 경우
	② 경영공시 제출 담당 <u>직원(대체직원 포함) 코로나19 확진</u> , <u>全 임직원의 격리조치</u> 등으로 기한 내 경영공시가 불가한 경우
	③ <u>순환재택근무 실시·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둥</u> 으로 인해 기한 내 경영공시가 불가한 경우
	④ 기타 ①~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판단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①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0년 4월 29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55)

대상행위	□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사무공간(사무실)이 폐쇄되거나, 순환재택근무 실시· 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신협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 코로나19로 금융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법령상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0.4.1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여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아래 사유로 업무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이행하면 조치를 면제할 예정(다만,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 동기 등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음) ※ 단, 사유가 해소된 이후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보고서는 비조치대상이 아님
	□ 동 비조치의견은 제출기한이 '20.4월말부터 12월말까지인 업무보고서에 대해서만 적용
판 단	□ 다만, 코로나19로 개별 조합이 업무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본점 등 폐쇄조치가 해소된 이후 신협중앙회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아 래 -
	①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의 영향으로 해당 <u>조합 본점 또는 대체사무 공간(지점 등)이 폐쇄</u> 되어 기한내 업무보고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② 경영공시 또는 업무보고서 제출 담당 <u>직원(대체직원 포함) 코로나19 확진</u> , <u>全 임직원의</u> <u>격리조치</u> 등으로 기한 내 업무보고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③ 순환재택근무 실시·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 으로 인해 기한 내 업무보고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④ 기타 ①~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판단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①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0년 4월 29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56)

대상행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인하여「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2조 제1항제4호에서 정한 예대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2021.6.30.까지 예대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신용협동조합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 2020.4.1. 발표된「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예대율 규제비율에 근접한 일부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0.4.1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판 단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이내의 예대율 규제를 위반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해 2021.6.30.까지 조치를 면제할 예정 * 2020.4.1. 발표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다만, 개별 조합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예대율 기준 규제비율(80~100%)을 상회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①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0년 4월 29일 금융감독원 원장 (인)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58)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등으로「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유동성비율 규제(100%)를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 단	 □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더라도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가이드라인」이행으로 인해 유동성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2020.4.20.)한 바 있으며 ○ 동 유연화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유동성비율 규제를 10%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1.6.30.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 다만, 유동성 규제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그 원인,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판단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①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 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0년 4월 일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59)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등으로「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예대율 규제(2020년 110%, 2021년 이후 100%)를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 단	□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더라도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가이드라인」이행으로 인해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2020.4.20.)한 바 있으며
	○ 동 유연화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예대율 규제를 10%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1.6.30.까지『상호저축은행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 다만, 예대율 규제비율을 상회하게 되는 경우 그 원인,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①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 가 있는 경우

2020년 4월 일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60)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등으로「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1항에따른 조치를 면제
판 단	□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더라도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가이드라인」이행으로 인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2020.4.20.)한 바 있으며
	○ 동 유연화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021.6.30.까지「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 다만,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①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0년 4월 일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75)

요청대상 행위	 □ 오토리스(운용) 및 렌터카 상품 중 차량미반납 상태인 장기연체채권이 존재하며, 차량회수가능성은 없음 ○ 관련하여 '미반납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가능성 및 범위', '대손상각 처리를 위한 운용리스자산 해지후 채권화 필요성'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
판 단	 □ 비조치의견서 요청서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해지가 차량을 회수하여야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움 ○ 다만, 해지운용리스채권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상각할 수 있음 ○ 또한, 해지운용리스채권에 준하는 채권의 경우에도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경우 대손상각이 가능함
판단이유	 □ 금융기관대손인정업무시행세칙 제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해지운용리스채권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상각할 수 있음 ○ 또한, 동 시행세칙 제2조 제1항 제차목에 따르면 이에 준하는 채권 역시 금융회사 등의 채권으로 간주되므로 추정손실로 분류될시 대손상각이 가능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92)

요청대상 행위	□ 지역주택조합을 채무자로 하는 PF대출 취급 시 조합원부담금의 자기자본* 인정 여부 질의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Ⅲ-1-①의 자기자본
판 단	□ 조합원부담금의 자기자본 인정 여부는 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 등을 개별 적으로 검토하여 ② 조합원부담금이 PF대출의 실질적 버퍼*로서 기능할 수 있 는 경우에 한해 자기자본으로 인정할 필요 * 예) 조합원의 조합 탈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조합청산 시 조합원부담금이 저축은행의 PF대출 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경우
판단이유	 □ 지역주택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부담금 납부 및 조합청산에 관한 절차 등의 내용을 조합규약으로 정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참고로 본 요청건은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해석에 관한 내용이며, 동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합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112)

요청대상 행위	□ '21.1.12.부터 귀사가 저축은행에 대해 신규로 판매하는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이「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1 제28조 제4항에서 정의한 '사잇돌 2 [*]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의 *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을 의미
판 단	□ 귀사가 '21.1.12.부터 신규로 판매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1 제28조 제4항에서 정의한 '사잇돌2'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판단이유	 □ 귀사가 '21.1.12.부터 신규로 판매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은 기존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사잇돌2대출)과 가입대상 채무자 및 보험가입 채무자 자격 요건, 대출기간, 대출 상환방식 및 보험요율 등이 동일한 상품으로, ○ 귀사가 사잇돌2대출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누적 손실을 보전하고 저축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 유도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항목을 개정한 것임 ※ 금융위도 귀사가 신규로 출시하는 중금리 신용상품이 사잇돌2와 같이「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2(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제2항 제1호에서 정의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두 해석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 전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00095)

요청대상 행위	□ 가족카드 발급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본인 및 가족회원의 음성통화 및 녹 취로 확인 가능한지 여부
판 단	□ 음성통화를 통해 단순히 가족 여부만을 질의·응답받고 이를 녹취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족 범위를 넘어서는 제3자 등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증빙서류 징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족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존 우리원의 지도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등의 회신내용은 가족카드 발급 취지에 맞게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방지 등을 위해 가족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판단이유	□ 따라서, 음성통화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징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족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가족 범위를 넘어서는 제3자 등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분쟁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2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